

아내학대 위험성 평가도구 개발연구

이수정* 이혜선 이수경 김현정
경기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의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가정폭력 발생 시 아내학대의 위험성을 면밀히 판단할 수 있는 평가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외국의 위험성 평가도구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 자료를 수집, 조사하고, 효과성이 검증된 재범위험성 평가도구들을 분석하였다. 연구 1에서는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상담원들을 대상으로 국내 가정폭력 범죄의 발생요인을 분석하고 가정폭력 가해자들의 정적인 위험요소와 역동적인 위험요소가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외국의 가정폭력 및 아내학대 위험성 평가도구들과 연구 1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 사건에 적합한 재범위험성 평가도구를 개발하였다. 연구 2에서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아내학대 위험성 평가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사하기 위하여 다른 유사 위험성 평가도구와 비교 분석 및 예측 절단점을 산출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개발한 아내학대 위험성 평가도구인 WARA(Wife Abuse Risk Assessment)의 준거관련타당도 및 평가자간 신뢰도가 우수함이 검증되었다. 또한, ROC분석으로 준거집단의 변별기준점을 산출한 결과, 고위험 집단과 저위험 집단을 적절히 변별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실증적 연구결과들은 형사사법기관의 자의적 판단을 보다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기에 가정폭력에 기인한 고도의 위험가능성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가정폭력, 아내학대, 위험성 평가, 고위험군, 저위험군, 형사사법

우리나라에서 1990년대 이후 실시된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폭력 발생률이 28%~36%에 달하며(박영란, 2006), 여성긴급전화 1366의 2005년 가정폭력 상담은 47,021건에 달한다.¹⁾ 한편, 여성가족부 조사(2005)에 의하면 전국 기혼가구 6가구 중 1가구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찰청의 2003년부터 2007년 6월까지의 가정폭력신고 현황을 보면, 가정폭력 신고건수는 총 5만9천여건이며, 피해자는 6만5천59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신고된 가정폭력사건 중 아내학대는 4만8천984건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 2007년 10월26일).

가족의 구성원에 의해 다른 가족 구성원이 피해를 입는 가정폭력은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와 인간성을 파괴하고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는 심각한 폭력행위이다. 특히, 오랜 기간 남편으로부터의 학대를 받았던 여성들은 심각한 신체적, 심리적 상해를 경험하게

* 교신저자 : 이수정, (442-76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산 94-6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전화 : 031) 249-9198, E-mail : suejunglee@hanmail.net

1)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가정폭력상담건수는 총 162,673건이다(한국여성의전화연합, 2006).

되어 그 결과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다.)

서구의 경우 가정폭력이 하나의 사회문제로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들어서면서부터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1960년대와 70년대에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매 맞는 여성들을 위한 핫라인과 쉼터 등이 생겨났으며 피해 여성들을 지원하면서부터 가정폭력이라는 것이 일부 소수 가정만의 문제가 아님을 확인하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가정폭력을 방지했을 때 예상되는 가족구성원의 사망 등으로 인한 심각한 위험을 고려하여 최근에는 가정폭력을 살인예방의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조치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조치와 정책들을 강구하고 있다(김은경, 2006).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 들어 가정법원이나 가정법률상담소, 여성의 전화 등에 구타당하는 아내들의 실상이 드러나면서부터 가정폭력 문제가 사회적으로 가시화되기 시작하였다(홍창희, 1997). 이후 가정폭력의 근절과 예방을 위해 국가의 본격적 개입이 시작된 것은 1997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정폭력방지법’)을 제정하면서부터이다. 폭력피해 여성들을 위한 상담소나 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와 지원이 확대된 것은 바로 이 법률에 근거해서이고 이때부터 피해 여성에 대한 보호가 현실화되었다.

그러나 1998년 7월 가정폭력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가정폭력 신고는 증가되고 있지만, 가정폭력방지법이 실제로 가정폭력 재발방지와 피해자 안전보호에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가정폭력방지법의 중심축인 가정보호라는 입법취지가 오히려

려 피해자의 안전 및 보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데에 기인한다. 즉 가정폭력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단순화함으로써 기소유예나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형사처벌 대신 상담이나 치료, 수강명령 등 극히 수동적인 보호처분에만 의존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와 문제들에 대한 인식은 2007년 7월 3일 ‘가정폭력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결과를 이끌었다. 이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점은 검찰에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가정폭력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우가 부재하였던 과거와 달리 보다 적극적인 치료적 개입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기도 하다. 그러나 개정법안은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침에 불기소처분, 기소유예,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가정보호사건 송치 등에 대한 상세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가정폭력을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고위험군의 가정폭력 가해자들을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피해자의 안전과 보호는 물론 폭력 재발 억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커다란 문제점이 예상된다.

그동안 시범적으로 실시되었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드러난 것은 가해자에게 상담권고를 내린 후 사후조치가 없다는 점이다. 즉 가해자가 상담을 제대로 안 받는 경우, 기소유예를 취소하고 기소를 하거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한 예는 없었다. 그 결과 상담조건부 기소유예가 종국처분이 되는 경우에 가해자는 스스로 면죄부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상담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상담을 받으면서 한편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우먼타임즈, 2007).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이를 어디에도 호소할 수 없고 다시금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 도리밖에는 없다.

미국, 영국 등에서는 기소를 위한 수사실무규약에서 검사로 하여금 가정폭력 사건을 처음부터 마치 살인사건 소송처럼 다루도록 권고하고 있다(김은경, 2006). 또한 경찰

2) 이에 관련하여 최근에는 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이하 PTSD)’라는 진단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이수정, 서진환, 2005; 채영주, 2005). PTSD란 신체적인 손상 및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한 후 나타나는 정신적인 장애가 1개월 이상 지속되는 질병으로 정의되고 있다. PTSD는 DSM-IV에서 명시하는 바와 같이 첫째,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죽음, 심각한 상해 또는 신체적 안녕을 위협당한 경험을 말하며, 둘째, 개인이 느끼는 공포, 무력감 및 고통경험을 말한다. 즉 강간, 아내구타와 같은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악몽을 꾸거나 비슷한 자극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려는 경향을 나타내면서 불안, 악몽, 두려움, 무력감, 공포 등을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낼 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피해자의 심리적, 정서적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해 볼 때 가정폭력 및 학대는 외상적 사건 즉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김현정, 이수정, 2007).

3) 이에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을 비롯한 여성계에서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의 경우 반드시 모니터를 하도록 하여 상담을 어디서 받았는지 제대로 보고서를 받고 불성실하게 상담을 했거나 상담 중 폭력이 발생한 경우 처리 등을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기간을 정하여 이 제도가 실효성있게 진행이 되는지 모니터를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 요청되고 있다.

및 검찰은 소송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계획을 세워야 하는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가해자 개입과 처우 전략을 기획함에 있어서 피해자 안전 확보를 위한 소위 “위험조사”를 반드시 시행하여 판사와 배심원 등에게 해당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정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검사 개인의 재량에 맡겨져 온 우리나라와는 대비되는 부분이다.

장기적 가정폭력이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은 사례나 피해자였던 배우자가 오히려 가정폭력의 가해자를 살해하는 등에서처럼 가정폭력에 기인한 위험은 생명의 손실을 담보로 한다. 이와 같은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는 오히려 검찰이 가정폭력 가해자들에게 상담을 받는 것을 요건으로 하여 일시적으로 면죄부를 주는 측면이 있다. 사전적 선별 없이 가해자를 무조건 상담에 임하도록 허용한다면 상담이 효과성을 발휘하기 보다는 오히려 이와 같은 처분을 악용하여 혼인관계를 유지한 채 가정폭력을 만성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 같은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는 상담조건부기소유예 혹은 보호절차로 회부하는 과정에서 위험수위에 대한 평가가 꼭 필요하며 그에 근거하여 상담이 대안이 될 수 있는 적격한 대상자를 선별해 문제행동을 교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명 손실 등 고도의 위험을 예견하게 하는 사건에 대하여서는 상담을 조건부로 기소를 유예시켜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욱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험성 평가는 경찰, 검찰, 법원이 모두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가정폭력 사건 발생초기에는 피해자의 적절한 보호를 위해서는 경찰의 위험성 평가가 더욱 중요하다. 이는 피해자에 대한 위해행위가 임박해오고, 가정폭력이 재발할 위험성이 농후할 경우 경찰은 비록 가해자가 현재 범죄성립요건을 충족하는 범죄를 범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긴급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김재민, 2007). 또한, 가정폭력 가해자의 위험성과 재범 가능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가정폭력 사안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이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생명의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과정이다. 즉 위험성 평가는 궁극적으로는 폭력발생 및 생명 손실을 억제함으로써 가정폭력으로부터 시민

과 사회의 안전과 보호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이처럼 가정폭력에 대한 위험성 평가는 중요한 의의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가정폭력 재범위험성 평가도구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의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가정폭력 발생 시 아내학대의 위험성을 면밀히 판단할 수 있는 평가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우선, 외국의 위험성 평가도구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 자료를 수집, 조사하고, 효과성이 검증된 재범위험성 평가도구들을 분석하였다. 연구 1에서는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상담원들을 대상으로 국내 가정폭력 범죄의 발생요인을 분석하고 가정폭력 가해자들의 정적인 위험요인과 역동적인 위험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외국의 가정폭력 및 아내학대 위험성 평가도구 및 연구 1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 사건에 적합한 아내학대 위험성 평가도구를 개발하였다. 연구 2에서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위험성 평가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사하기 위하여 다른 유사 위험성 평가도구와 비교 분석 및 예측력 절단점을 산출하였다.

재범위험성 평가방법

형사사법 시스템 내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범죄자를 평가하는 많은 방법들이 있다. 전통적으로 보자면, 크게 두 가지 평가체제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는 정신의학적 위험성 평가와 통계적 위험성 평가가 그것이다. 가장 전통적인, 정신의학적인 평가는 대상자의 현재 인격 상태와 환경조건 또는 과거의 성장 환경 등을 전반적으로 분석·검토하여 최종적으로 당사자의 재범가능성을 전문가들이 ‘네’ 또는 ‘아니오’로 판단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평가 방법은 일반적으로 비표준화 된 분야에서 전문가가 범죄자들에게 여러 질문을 한 후, 주관적이고 직관적인 판단을 한다. 그래서 이 방법을 흔히 전체적 평가법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러한 정신의학적·직관적 평가법은 소위 말하는 직업적 전문성에 주로 의존한다.

반면, 통계적 평가법은 대개 범죄자와 비범죄자 집단을 대상으로 재범과 관련이 되는 요인들을 조사하고 이를 통

계적으로 체계화한 기준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소위 범죄예측표라고 불리는 일정한 범인성 요인을 기준으로 해서 각 개인의 위험요소를 계량적인 방법으로 측정해낸다. 이러한 통계적 평가는 과거의 많은 사례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에 의존하기 때문에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으며, 경험적인 자료에 대한 사전 분석을 근거로 위험요인을 산출하기 때문에 일정한 훈련 기간을 거치면 쉽게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통계적 평가는 재범 발생률을 예측할 때 임상적 평가보다 더 나은 결과를 보여준다고 알려져 있다(Andrews & Bonta, 1998; Grove, Zald, Lebow, Snitz, & Nelson 1995; Hanson & Bussier, 1998). 통계적 위험성 평가는 광범위한 연구를 통해 개발된 표준화되고 객관적인 평가도구의 사용을 포함한다. 이러한 도구들은 일반적으로 범죄위험성의 계량적으로 측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도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미래에 범죄적 또는 반사회적 행동을 할 확률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좋은 통계적 위험성 평가는 기본적으로 역동적 위험요인과 정적 위험요인을 모두 포함한다. 정적 위험요인은 변하지 않는 재범 관련(초기 입건 연령, 가족 관계, 나이 등)요인인 반면, 역동적 위험요인은 개입을 통해 바뀔 수 있고 처우의 목표가 되는 재범 관련 요인(범죄적 태도, 잔인한 기질, 낮은 자존감, 죄책감 결여, 교우관계, 알코올/약물 남용 등)이다. 현대의 위험성 평가 도구들 대부분은 정적 위험요인(범죄경력, 교육정도/직업, 생활에서의 중요한 관계)을 바탕으로 역동적 위험요인을 함께 고려한다(Andrews & Bonta, 1998).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위험성평가, 그리고 기정폭력

검찰은 최근 ‘절도, 사기, 폭력’ 등 3대 범죄에 대해 양형 요인을 분석하여 구속·구형 기준을 새로이 정비하였다. 이를 위하여 검찰은 2007년 7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924건의 법원의 선고 형량과 검찰의 구형량 등을 분석하여 보다 체계화된 구속영장 청구 및 구형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은 최근 형사소송법의 개정의 취지와도 맥을 같이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형사사법 영역에서 가장 큰 불신의 대상은 양형문제였다. 즉 유사한 범죄와 죄질에도 불구하고 법관마다 또는 심급마다 상이한 형량으로 해서 양형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던 것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는 양형데이터베이스 구축, 참고적 양형기준제도의 도입, 양형위원회의 설치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는데, 개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는 이와 같은 방안들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

이 같이 양형절차에 있어 크나큰 변화를 도입하게 된 데에는 사실인정절차와 양형절차가 원래 이분화 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법 구조상의 특징이 반영되어 있다. 소송구조가 절차이분론을 취하고 있지 않은 연유로 해서 범죄사실의 인정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던 데 비하여 양형의 근거가 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조사과정은 다소 그 중요성이 간과되던 것이 사실이었다(김혜정, 2006). 세계적으로 판결전조사절차에 많은 비중이 주어지는 데 비해 우리나라의 사법절차에서는 지금까지 양형판단의 주요 근거가 되는 판결전조사절차가 주목받지 못하던 연유는 바로 이 같은 법 구조상의 특징과 관련된다.

양형단계는 유무죄의 확정 이후 형벌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절한 형벌을 발견하여야 하는 단계이다. 따라서 범죄사실에 대한 조사 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비유형적 정보에 대해서도 수집을 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며,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양형단계는 사실인정단계와는 달리 취급될 필요가 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당사자주의 소송구조를 따르는 미국에서는 법원이 직권적으로 양형에 대한 자료조사를 운영하며, 독일의 경우 사법보조제도를 두고 있어서 사법보조관이 피의자를 접견하여 조사활동의 결과를 검사나 법원에 보고서로써 제출토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개정 형소법에서는 검사에 의한 기소전조사를 인정하여 보호관찰관들이 양형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를 조사하도록 함과 동시에 법원소속 조사관을 통하여서도 양형자료 조사를 시행하도록 인정하고 있다. 이는 검찰의 지휘를 받는 기소전조사의 경우 검사가 피의자와 대립하는 입장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와 함께 양형을 관찰하기 위하여 조사를 집행하려는 의지가 반영되기 때문이다.

개정된 형소법에 따르면 서로의 필요에 따라 검찰에 의한 기소전조사와 법원에 의한 판결전조사를 중복적으로 모두 인정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국내 조직상의 업무특

성은 앞으로 행정적 수요와 편의에 따라 재조정될 여지가 많다. 현재로서 주목할 사항은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형소법의 개정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지금까지 거의 형식적으로 집행이 되어 왔던 판결전조사과정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는 점이며 최근에는 판결전조사(혹은 기소전조사라도) 시 무엇을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조사해야 하는 문제가 그 다음으로 부각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 법체제에 따라 검찰이든 법원이든 양형에 대한 의사결정 전언제나 조사과정을 거친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조사과정은 범죄사실에 대한 신문절차와는 독자적으로 운영된다. 특히 서구의 경우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라는 포괄적인 용어로서 양형인자에 대한 다양한 조사절차를 지칭하기도 한다.

가정폭력의 경우 사실상 유무죄 입증절차는 크게 어려운 의사결정과정이지 않다. 허나 형사처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구형 판단은 상당부분 검사의 주관적 잣대에 의해 좌우된다. 현재로서는 명확한 평가기준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검사가 가정폭력사건에 대하여 구형할 시 주로 고려하게 되는 문제는 재범가능성이다. 대부분의 가정폭력이 상습적이라는 사실을 고려하고 본다면 일부 사건의 경우 가족구성원들의 생명 손실까지도 염려해야 할 요건이 될 수 있다.

오랫동안 폭행을 일삼아오던 남편을 살해한 남편살해사건들의 경우 폭력의 가해자가 피해자에 의해 사망하기 전까지 여러 번 가정폭력의 피해를 피의자가 호소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이수정, 서진환, 2005; 채영주, 2005). 남편 살해로 청구교도소에 수감 중인 여성 12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남편으로부터의 피학대 경험은 82.9%(107명)에 달했고, 매월 1회 이상 폭행을 당한 경우도 66.6%로 조사되었다(김영희, 박광배, 이재희, 2004). 이는 피학대로 인해 배우자를 살해한 여성들이 오랫동안 피해자들로부터 학대를 받아왔으며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형사사법적 개입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추정하게 만든다. 결국 형사사법적 개입의 부재는 배우자 중 한 사람의 생명 손실로 이어지는 결과로 산출된 것이다.

이 시점에서 고민해보아야 하는 점은 가정폭력에 대해 형사처분을 지양하는 사법부의 태도가 가정폭력 가해자나 피해자의 생명 손실을 담보로 하는 것일 수 있다는 사

실이다. 이 같이 가정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극단적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권 보호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데, 여러 연구들에서 지적된 가정폭력의 만성적 기제를 고려해 볼 때 단기상담만으로 이루어지는 현재의 체제는 가정폭력을 위한 결코 궁극적인 대안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사법개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서는 검사선의주의에 따른 합리적 구형기준의 마련이 꼭 필요하다. 가정폭력 재범위험성 평가, 나아가 가족구성원의 생명 손실 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이 같은 가정폭력의 악순환에서 피해자는 물론 가정폭력 가해자의 생명보호를 위해서도 가장 유용한 판단기준이 될 것이다.

가정폭력 재범위험성 평가 요인 및 도구

기존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가정폭력 재범과 관련된 위험요인들과 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정폭력 재범위험성 관련 평가도구들을 살펴보자. 우선, 재범을 예견하는 위험요인들은 정적 요인과 역동적 요인으로 분류될 수 있다(이수정, 윤옥경, 2003).

가정폭력에 대한 정적 위험요인들은 분리, 임신 혹은 출산, 공격의 심각성과 빈도 증가, 성적 학대, 과거 폭력범죄 경력, 자녀학대, 과거 무기 사용 또는 강력한 생명의 위협, 어렸을 때의 폭력적 가정환경, 동물 학대, 현재 고용 문제, 현재 자살 또는 살해 판명·의도, 스토킹, 접촉비접촉 명령 위반 등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재범을 예견하게 해주는 역동적 위험요인들은 낮은 자아존중감, 성역할에 대한 경직되고 왜곡된 기준, 의존성과 극심한 질투, 편집증, 분노, 폭력을 갈등 해결의 도구로 인정, 권력과 통제에 대한 과도한 욕구, 음주 및 약물남용, 문제의 축소나 문제 자체의 부인 등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영국 런던 수도경찰청(MPS)이 사용하고 있는 위험성 평가요인과 미국 미시간 주 경찰이 평가 자료로 쓰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치명적 위험성 요인에는 ‘당사자 간에 이혼수속을 밟고 있거나, 이혼 상태에 있거나, 별거 중인 경우’, ‘근래에 폭행의 빈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을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성폭행을 가해 올 경우’, ‘스토킹 등의 행태로 피해자를 괴롭혀 온 경우’, ‘흉기를 소지하고 폭행한 경우’, ‘애완동물을 죽이는 경우’, ‘약물 혹은 알콜 중독자인 경우’ 등이 있다(김

표 1. 가정폭력 위험성 평가도구 소개

도구명	도구 설명
SARA	Spousal Assault Risk Appraisal Guide는 1994년 Kropp, Hart, Webster, 그리고 Eaves에 의해 처음 개발되었으며, 2000년 Krop와 Hart에 의해 개정되었다(Gramm & Wedin, 2002). 대상은 남성 가해자이며, 배우자 폭력에 대한 20개의 위험요인들을 평가를 평가한다. 평가자들은 3점 척도(0점은 해당없음, 1점은 부분적으로 또는 아마도 해당함, 2점은 확실하게 해당함)로 평가한다.
DAS	Danger Assessment Scale은 1995년 피츠버그 대학의 Campbell과 동료 연구자들이 피학대여성들과 그렇지 않은 여성들이 경험하였던 피학대 경험을 비교해 봄으로써 개발한 위험성 사정 척도이다. DAS는 장기화된 배우자와의 폭력상황에서 피학대여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남편의 학대에 기인한 위험요인을 측정해준다(Campbell, 1981, 1986, 1995; Stuart & Campbell, 1989).
ODARA	Ontario Domestic Assault Risk Assessment는 캐나다 온타리오주 경찰과 정신건강센터가 협력하여 개발한 아내 학대 예측도구이다(Hilton, Harris, Rice, Lang, Cormier, & Lines, 2004). 13개의 예/아니오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항목들은 가해 남성의 폭력적 · 반사회적 행동 이력, 최근 학대의 세부적 행태, 피해자의 개별적 상황 등에 대한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DOVE	Domestic Violence Evaluation은 Ellis에 의해 2005년 제작되었다. DOVE는 19개의 예측요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측요인들은 해로운 활동(폭력, 정서적 학대, 심각한 정서적이고 신체적인 상해, 살인에 대한 위협)과 그것들에 대한 반응(명령에 저항하거나, 음주나 약물에 대해 불평하고, 상담가 또는 정신과 의사에게 치료받거나 집을 떠나는 것), 관계문제(같이 지내기 어렵거나, 비난하는 것), 마찰, 통제, 분노와 정신 건강문제들이다(Ellis, 2005).
PAS	Propensity for Abusiveness Scale은 유죄판결을 받은 폭력적인 학대자뿐 아니라 비폭력적인 일반 남성들의 자료를 토대로 1995년 Dutton에 의해 제작되었다. 이 척도는 부모치료, 애착 형태, 분노 반응, 외상 징후, 자기개념의 안정성 등의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VRS	Violence Risk Scale은 Wong과 Gordon에 의해 1999-2003년에 개발되었고 2006년에 개정되었다. 이 도구는 대상자의 폭력 위험성의 수준을 평가하고, 폭력과 관련된 치료목표를 검증하며, 변화하고자하는 대상자의 욕구와 그들의 치료 후 향상정도를 평가한다.
VRAG	Violence Risk Appraisal Guide는 폭력 재발을 예측하는 도구이다(Quinsey, Harris, Rice, & Cormier, 1998). VRAG는 12개의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상은 심각한 폭력범죄나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이다. 아동기 행동에 대한 이해, 가정환경, 반사회적인 범죄행동, 심리적 문제, 등을 평가한다.
IBWB	The Inventory of Beliefs about Wife Beating은 아내에 대한 태도와 믿음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다(Saunders, Lynch, Grayson, & Linz, 1987). 31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는 아내폭행의 정당화, 폭행에 대한 보상, 도움의 필요성, 가해자 처벌의 불가결성, 가해자의 책임성이라는 5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CTS	Conflict Tactics Scale은 가정폭력을 평가하는 가장 널리 쓰이는 도구이다(Straus, 1979, 1990). CTS는 데이트하는 동안이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대한 폭력을 측정할 때 사용하며, 배우자 간 신체적 학대, 심리적 공격, 협상의 갈등을 측정한다(Straus, Hamby, Boney-McCoy, & Sugarman, 1996).
PCL-R	1980년에 Hare박사는 정신병질을 측정하기 위해 PCL을 개발했고, 1991년에 PCL-R로 개정하였다(Hare, 1996). PCL-R은 크게 2요인, 4개의 측면으로 구성되었다. 요인 1은 측면 1인 대인간 특징과 측면 2인 정서적 특징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요인 2는 측면 3인 생활방식과 측면 4인 반사회적 행동으로 구성된다.

재민, 2007).

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정폭력 위험성 평가도구들은 재범위험성을 평가하는 것에서부터 폭력의 치명성, 일

반폭력위험성을 평가하는 등으로 다양하다. 그 중 현재 널리 쓰이며, 잘 알려진 가정폭력 위험성 평가도구들은 표 1과 같다.

연구 1

아내학대 위험성 평가도구(Wife Abuse Risk Assessment : WARA) 개발

참가자

국내 실정에 맞는 가정폭력 특히, 아내학대의 위험요인 목록을 얻기 위해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지원하고 상담하는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상담원 37명이 설문에 참가하였다. 가정폭력 상담 경험이 비교적 많이 있는 상담원들을 선별하기 위해 상담경력을 전일제 상담원은 3년 이상, 시

간제 상담원은 5년 이상으로 제한하였으며, 상담지역 제한을 두지 않고 전국으로 하였다. 이들 37명의 평균 상담 기간은 약 5년이었고, 평균연령은 약 41세였다.

도구

가정폭력 위험요인에 대한 질문지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상담원들에게 배포한 위험요인 추출목적의 예비 질문지는 개방형 질문과 폐쇄형 질문이 혼합된 형태로 구성되어, 하나의 위험 요인에 대해 반복 측정이 가능하게 하였다. 이 때 개방형 질문은 상담원의

표 2. 아내학대 위험요인 개방형 빈도

위험요인	빈도	위험요인	빈도
1. 욕설	26	27. 외도	6
2. 의처증(의심, 누구만났냐, 질검사...)	24	28. 변태적 성관계(구강성교, 변태적행위, 포르노행위, 애들앞 성교 요구)	6
3. 무기로 위협(칼, 가위, 전기톱, 농기구...)	24	29. 자녀폭행	6
4. 발로 밟거나 차기(목, 배...)	23	30. 경제적 학대(시아머니 관리, 남편시장, 빚...)	5
5. 목조르기	22	31. 심한구타	5
6. 말로위협(땀에 파묻기, 불지르겠다, 애들과 다같이 죽자, 칼로 아랫도리 도려낸다, 지구끝까지 쫓아가서 죽이겠다, 집나가라...)	21	32. 가해자 자해하며 위협	5
7. 생활비안춤(가계부검사)	18	33. 의자로 머리 때림(몽둥이, 목발, 파리채...)	4
8. 뺨때리기	17	34. 성기에 이물질넣기(병, 손가락...)	4
9. 물건들고 때리기(야구방망이, 골프채, 각목...)	17	35. 술병꺼서 얼굴긋기	4
10. 친정 무시, 모욕, 협박(주위사람협박)	16	36. 임신기 구타	4
11. 물건던지기	16	37. 옷찢기	4
12. 집기부순다	15	38. 발가벗기기(아이들 앞에서...)	4
13. 주먹으로 때리기(손으로때리기, 얼굴, 머리...)	14	39. 자녀성추행	4
14. 때린후 강간	13	40. 머리자르기	4
15. 감금(외출금지)	13	41. 음모짜기, 뽑기	4
16. 담뱃불로 지지기(음부, 등, 손...)	11	42. 휴대폰추적(일상추적)	4
17. 무시	11	43. 사사건건 트집잡기	3
18. 강제적성관계(매일요구...)	11	44. 통화내역 조회	3
19. 머리채 휘어잡고 끌기	11	45. 묶은후 때리기	3
20. 벽에 부딪히기	10	46. 가둬놓고 때리기	3
21. 칼로 찌르거나 베기	10	47. 가족학대로 때리기	3
22. 잠안재우기	10	48. 밥상엎기	3
23. 머리만 때림	9	49. 내쫓음	2
24. 옷벗기고 때리기	9	50. 무기없는 위협(협박한표정, 손으로 때리려 쳐든다...)	2
25. 성적 비하발언	7	51. 잘못했다고 빌기	2
26. 망치로 때리기	6	52. 밀치기	2

경험을 생생하게 담을 수 있도록 사례를 중심으로 요인들을 쓸 수 있게 만들었다. 개방형 질문지에는 총 3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아내 구타나 아동학대를 포함한 모든 가정폭력 상담사례 중 기억이 남는 사례 2가지를 자세히 적는 것이다. 장폭력 상담사례에서 폭력행위의 특성에 대해 모두 적도록 구성되어 있고, 세 번째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폭력으로 인해 입은 피해의 결과에 대해 모두 적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폐쇄형 질문지는 가정폭력을 연구하는 기존의 국내 학회지 논문 60여 편과 20여 편의 외국논문들을 갈무리하고 그 안에서 반복되어 나타나고, 가정폭력의 위험을 반복시키는 요인들을 추출하여 요인 목록을 만들어, 그 목록 중 상담원들이 상담경험을 통해 가장 위험하거나 가장 빈번하다고 생각하는 요인 20개를 뽑도록 하였다.

결 과

아내학대 위험 요인의 빈도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상담원들이 응답한 질문지 중 아내 학대의 위험요인에 대한 개방형 질문에 대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의처증에 관한 내용 24, 욕설 26, 무기로 위협 24, 목 조르기 22, 발로 밟거나 차기 23 등의 내용이 가장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기타 내용으로는 침을 뱉는 다든가, 자녀 앞에서 때린다든가, 옷을 태운다든가, 얼굴에 소변을 분다든가, 이중적 태도(남들과 같이 있을 때 vs 둘만 있을 때), 자기 비난하는 것 못 참는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아내 탓으로 돌리고, 원하지 않은 임신했을 때 아내를 폭행한다와 같은 내용들도 있었다.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상담원들이 응답한 질문지 중 아

표 3. 아내학대 위험요인 폐쇄형 빈도

위험요인	빈도	위험요인	빈도
1. 가해자의 흥기위협	30	28. 피해자외의이성과의연애	11
2. 가해자의 흥기사용	30	29. 가해자의 자살위협	11
3. 가해자의 이유 없이 배우자를 의심 하는 성격	29	30. 피해자의성장기의가정폭력경험	11
4. 가해자의 성장기 가정폭력의 경험	28	31. 피해자의 경찰신고	11
5. 가해자의강제적인성관계	27	32. 가해자의 불안정한 직업	9
6. 가해자의살해위협	27	33. 가해자의 후회 및 죄책감 결여	9
7. 배우자를 소유물로 생각하는 태도	26	34. 가해자 이외의 이성과 동거	9
8. 술을 마시고 취한상태에서의 폭행	25	35. 자녀에 대한 신체적 학대	9
9. 발로차기	25	36. 피해자의 통화목록 조회	8
10. 목조르기	25	37. 가해자의 공감능력결여	8
11. 임신중 폭행	22	38. 피해자의 우울증	8
12. 가해자의 배우자 무시하는 태도	22	39. 피해자의 이혼요구	6
13. 가해자의 알콜중독	22	40. 피해자외의 이성과 동거	5
14. 가해자의 욕설 및 비난	22	41. 가해자의신체적장애	5
15. 가해자의결혼전폭행	21	42. 가해자의 진과	5
16. 벽에다가 밀치기	21	43. 원하지 않는 임신	5
17. 피해자가 호소하고 있는 심각성의 정도	21	44. 가족이외의 타인폭행	4
18. 뼈가 부러지는 등의 심한 상해	20	45 가해자의 성매매 이성과 성관계	3
19. 행동통제(메시전 전화확인, 피해자의 계획을 허락해주는 행위)	19	46 .피해자의 이메일 해킹	3
20. 가해자의 심한 질투	18	47. 가해자의 애완동물 학대 경험	3
21. 가벼운 손찌검	17	48. 피해자의 알코올 중독	3
22. 가해자의 자해 및 자해시도	14	49. 피해자의경제적무능력	3
23. 피해자 묶기	13	50. 가해자이외의 이성과의 성관계	2
24. 삶의 장애를 가져오는 상해(영구 손상)	13	51. 피해자가 집을 떠나는 시도 및 행동	2
25. 자녀에 대한 성적 학대	13	52. 피해자의 유산	1
26. 타박상이나 조금 베인 상처입히기	12	53. 가해자이외의 이성과 연애	1
27. 가해자의 우울증	11		

표 4. 아내학대 위험성 평가(WARA)

신체적 학대 ()점			대처행동 ()점		
1. 저수준	0	1	2	12. 회피	0 1 2
2. 중수준	0	1	2	13. 대응 방법	0 1 2
3. 고수준	0	1	2		
성적 학대 ()점			경제적 학대 ()점		
4. 강제적 성관계	0	1	2	14. 경제적책임 회피 및 방임	0 1 2
5. 변태적 행위	0	1	2	15. 배우자 경제권 불인정	0 1 2
심리적 학대 ()점			과거범죄력 ()점		
6. 모욕 및 수치심	0	1	2	16. 이전가정폭력 신고경험	0 1 2
7. 위협	0	1	2	17. 과거 가정폭력 외 입건	0 1 2
의처증 ()점			역동적 특성 ()점		
8. 의심	0	1	2	18. 알콜남용	0 1 2
9. 지배욕구	0	1	2	19. 여성 비하	0 1 2
				20. 폭력의 심각화	0 1 2
자녀학대 ()점			21. 잔인한 기질	0	1 2
10. 자녀학대	0	1	2	22. 공감능력 결여	0 1 2
스토킹 ()점			23. 죄책감 결여	0	1 2
11. 스토킹	0	1	2	24. 낮은 자존감	0 1 2

WARA 총 () 점

내학대의 위험요인에 대한 폐쇄형 설문 결과는 표 3과 같다. 가정폭력 가해자의 흥기사용이나, 흥기위협이 모두 빈도가 30으로 가장 위험하거나 빈번한 위험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뒤로 이유없는 배우자에 대한 의심이 29, 가해자의 살해위협과 가해자의 강제적인 성관계는 27의 빈도를 나타냈으며, 배우자를 소유물로 생각하는 태도가 26, 취한 상태에서의 폭행이 25, 발로차기와 목조르기가 모두 25의 빈도를 나타냈다.

위와 같은 상담원들의 개방형 질문과 폐쇄형 질문의 응답결과들은 기존의 국내외 연구에서 언급되었던 가정폭력 중 특히 아내학대에 대한 위험요인들과 중복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차이점도 나타났다. 우선, 무기사용, 성적인 학대, 과거폭력의 경력, 다양한 수준의 신체적 학대, 의심 등은 국내외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가정폭력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는 요인임이 나타났다. 반면, 국내에서는 외국과는 달리,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가계부를 심하게 검사하는 등의 경제적인 학대, 친정에

대한 무시와 모욕 등이 위험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의 연구에서 종종 언급되는 흥기사용, 스토킹, 이혼상대에서의 접근금지명령 위반 등이 나타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아내학대 위험성 평가도구 개발

연구 1에서 얻어진 위험요인들을 분석한 결과와 기존의 외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가정폭력 및 아내학대 위험성 평가도구들을 토대로 아내학대 위험성 평가도구(Wife Abuse Risk Assessment : 이하 WAR A)를 완성되었다. 여기서 가정폭력을 지속하는 요인들이 단일하지 않고 신체적, 심리적, 성적,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본 질문지를 작성할 때도 범주별로 나누어서 구성하였다. WAR A는 학위척도별로 중요도를 고려하여 문항의 수가 다르도록 구성하였고 이들 해당 문항들의 총점이 곧 WAR A의 하위척도 별 점수가 된다.

WAR A는 신체적 학대를 낮은 수준, 중간 수준, 높은

수준까지 각각 2점씩 총 6점으로 평가한다. 성적학대 요인에 대해서는 두 문항이 할당되어 있는데, 이는 강제적 성관계와 변태적 성행위, 각기 두 문항에서 2점씩 총 4점의 범위 내에서 평가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심리적 학대 요인은 모욕 및 수치심과 위협 두 문항으로 구성되어 각기 2점씩 최대 4점까지의 점수를 받도록 구성하였다. 의처증의 경우 가해자의 외도에 대한 근거 없는 의심과 지배욕구 두 문항으로 총 4점이 할당되도록 되어 있다. 스토킹과 자녀학대 소책도는 각기 한 문항씩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해자의 대처행동은 문제상황에 대한 회피와 적극적으로 맞서는 등의 대응방법 두 문항으로 구성되어 총 4점을 획득할 수 있다. 경제적 학대는 경제적 책임 회피 및 방임과 배우자 경제권 불인정 두 문항으로 구성되어 총 4점을 획득할 수 있었다. 과거 범죄력은 가정폭력 동종전과와 그 외 전과 여부로 나누어 총 4점을 획득할 수 있었다. 역동적 특성은 7개의 소책도로 구성되어 총 14점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WARA는 표 4와 같이 개발되었다. WARA의 평가방식은 3점 척도로 전혀 해당사항이 없으면 0점, 1~2개의 해당사항이 있으면 1점, 해당사항이 3개 이상일 때는 2점으로 채점한다.⁴⁾

연구 2

조사대상자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로는 교도소에 살인(살인미수 포함)이나 과실치사로 복역 중인 재소자들 중 배우자 혹은 내연의 관계였던 여성을 살해한 남성 48명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가정폭력에 기인하여 남편을 살해한 여성 재소자 24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이 때, 여성재소자 24명은 남편을 살해하기 전 수년간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온 사실을 확인한 바, 남편을 살해한 가해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가정폭력의 피해자 입장에서 조사되었음을 밝혀 둔다. 그리고 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대상자들 중에서 가정폭력사범 48명이 연구에 또한 참여하였다. 따라서 총 120명이 설문에 응하였고, 이 중 미응답

이 많았던 답변이 불성실한 설문지 25부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설문에 응한 교도소 재소자와 보호관찰대상자 중 추후 면담에 동의하였던 교도소 재소자 30명과 보호관찰대상자 48명에게는 추후 1 : 1 면담을 실시하였다. 추후 면담을 한 보호관찰대상자 48명 중 여성이거나, 배우자폭력 사건이 아닌 부모를 폭행한 자녀였던 대상자 총 7명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던 설문지는 시설수용자들 54명과 보호관찰대상자들 41명의 자료였다. 이들에 대한 전체 설문기간은 2007년 7월 19일부터 8월 31일까지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우선, 성별은 남자가 77명으로 81.1%를 차지하며, 여성은 18명으로 18.9%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37명(38.8%)으로 가장 많으며, 그 뒤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연령대는 50대, 30대, 60대, 70대, 20대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직업과 관련해서는 교도소 수감 중인 경우가 54명(56.8%)이었으며, 일용직이 13명(13.7%), 운전이 5명(5.3%), 무직이 4명(4.2%)이었다. 그 외의 기타로는 건설책임장, 건축유리, 노래방운영, 농업, 대부업, 요리사, 보일러설비, 신문보급소, 유통업, 의류제조, 이용업, 철강업, 재활용수집, 화가, 화장품판매, 환경미화 등이 각각 1명씩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범죄관련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범죄관련 특성은 우선, 현 범죄명은 살인이 49명(51.5%)이며, 가정폭력이 38명(40.0%)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 살인미수, 상해·상해치사, 존속살인이 7명(7.4%), 협박제물손괴죄가 1명(1.1%)으로 나타났다. 전과 수는 본 범이 첫 번째 범행인 경우가 15명(15.8%)이며, 1범이 9명(9.5%), 2범이 6명(6.3%), 3범 이상이 24명(25.3%)이었다.

가정폭력의 발생 시점은 응답자들의 가정폭력 발생시점을 결혼을 기준으로 나눈 것으로, 결혼 후 1년 내에 가정폭력 발생한 경우가 19명(20.0%)이며, 결혼 후 2년 내에 발생한 경우가 11명(11.6%)이었다. 또한, 결혼 전에 애인 간 폭력이 발생한 경우가 8명(8.4%)으로 나타났다.

4) WARA의 채점 매뉴얼은 2007년 법무부 연구용역 보고서인 '가정폭력 행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개발 연구'의 부록 5에 자세히 제시되어 있다.

표 5.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응답범주	명(%)	변인	응답범주	명(%)
대상자 분류	교도소	54(56.8)	성별	남	77(81.1)
	보호관찰소	41(43.2)		여	18(18.9)
전 체		95(100.0)	전 체		95(100.0)
연 령	20대(20-29세)	1(1.1)	현재 직업	일용직	13(13.7)
	30대(30-39세)	11(11.6)		무 직	4(4.2)
	40대(40-49세)	37(38.8)		운 전	5(5.3)
	50대(50-59세)	30(31.6)		기 타	18(18.9)
	60대(60-69세)	9(9.5)		수감중	54(56.8)
	70대(70-79세)	2(2.1)		무응답	1(1.1)
	무응답	5(5.3)		전 체	
전 체		95(100.0)	전 체		95(100.0)

표 6. 조사대상자의 범죄관련 특성

변인	응답범주	명(%)	변인	응답범주	명(%)	
가정폭력 발생시점	결혼 전	8(8.4)	범죄명	가정폭력(폭력)	38(40.0)	
	결혼 후 1년	19(20.0)		살인	49 (51.5)	
	결혼 후 2년	11(11.6)		살인미수	3(3.2)	
	결혼 후 3년	6(6.3)		상해, 상해치사	2(2.1)	
	결혼 후 4년	2(2.1)		존속살인	2(2.1)	
	결혼 후 5년	3(3.2)		협박재물손괴	1(1.1)	
	결혼 후 6년 이상	15(15.8)		전 체		95(100.0)
	무응답	31(32.6)		전 체		95(100.0)
전 체		95(100.0)	전 체		95(100.0)	

추가적으로, 가정폭력 발생이 결혼을 기준으로 가장 빠른 시점은 결혼 12년 전이며, 가장 늦은 시점이 결혼 후 19년 6개월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위험수준에 따른 집단분류⁵⁾

의사결정을 위하여 원점수를 등급 척도화 하는 작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관건은 예건의 대상이 되는 준거집단(고위험군/저위험군)의 타당성을 우선 확보하는 일이다. 본 연구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생명 손실의 위험성이 있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잘 변별해내는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표본에 포함되었던 피조사자들은 교

도소에 현재 수감되어 있는 시설수용자와 가정폭력으로 인해 보호관찰 중인 사회 내 처우 대상자 군이 있었다.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배우자 살해범들 중 가정폭력으로 인해 부인을 살해한 남편이나, 학대가해자인 남편을 살해한 피학대 여성의 경우, 본 연구를 위한 준거집단 중 확실하게 고위험군에 속한다고 간주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배우자의 생명을 손실하여 교도소에 현재 수감은 되어 있으나 사실상의 살해원인이 가정폭력이 아니었던 남성 친족 살해범들은 가정폭력을 기준으로 볼 때 가정폭력의 고위험군이라고 간주하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단순히 이들을 모두를 배우자 살해범으로 취급하여 자료를 분석하는 것보다는 타당한 예측 절단점을 산출하기 위해, 가정폭력이 아닌 이유로 배우자를 살해하였던 남성 살인범들은 고위험군이 아닌 저위험군으로 재분류하였다. 이와

5) 일반적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은 집단이 고위험군이나 범죄의 유형별로 매우 이질적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획일화하여 언급할 수 없다(Ostrom, Kleiman, Cheesman, Hansen, & Kauder, 2002).

표 7. WARA와 SARA, DAS, PCL-R의 상관관계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심리적 학대	의처증	자녀 학대	스토킹	대처 특성	경제적 학대	과거 범죄력	역동적 특성	WARA
SARA	.54**	.17	.39**	.33**	.27*	.44**	.32**	.24*	.28*	.46**	.54**
DAS	.69**	.57**	.66**	.69**	.42**	.62**	.47**	.37**	.30*	.49**	.75**
PCL-R	.18	.04	.15	.20	.12	.26*	.07	.06	.28*	.46**	.30*

* $p < .05$, ** $p < .01$

같은 재분류가 필요하였던 이유는 현재 개발한 측정도구의 보다 정확한 예측 절단점을 도출하기 위해서였다. 만일 준거집단이 타당하게 설정되지 못한다면 예측 절단점에 있어 심각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보다 정확한 예측 절단점을 찾기 위해서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대하여서도 가정폭력의 위험도를 재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였다. 가정폭력으로 현재 보호관찰 대상자로 선정된 자들 중에 전과가 3범 이상이며 이전에도 가정폭력 전과가 있는 자들과 일반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섞여 있었다. 따라서 전과 3범 이상이며 동종전과를 지닌 자들은 가정폭력의 고위험군으로 그렇지 않은 일반 보호관찰 대상자들은 저위험군으로 분류하였다. 이와 같은 기준에 의거하여 새롭게 저위험군으로 분류된 피조사자들은 총 26명(27.4%),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피조사자들은 총 69명(72.6%)이었다.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가정폭력 재범위험성 평가도구들은 WARA(Wife Abuse Risk Assessment), SARA (Spousal Assault Risk Appraisal Guide), DAS(Danger Assessment Scale), PCL-R(Psychopath Checklist- Revised)이다. 우선, WARA는 연구 1을 통해 개발한 아내학대평가도구이며, 가정폭력 특히 아내학대와 관련이 있는 10개의 범주를 평가하도록 되어있다. WARA의 문항수는 24개로 3점 척도로 구성하여(0 : 전혀 해당없음, 1 : 가끔 해당함, 2 : 아주 해당함) 총점은 48점이며, 본 연구에서 WARA의 신뢰도 중 내적합치도 계수(α)는 .91이었으며, 평가자간 신뢰도인 상관계수(r)은 .01의 유의수준에서 .98이었다. 또한, SARA, DAS, PCL-R은 표 1을 통해 소개하였다. 본 연구에서 SARA의 신뢰도 중 내적합치도 계수(α)는 .80, DAS의 내적합치도 계수(α)는 .80, PCL-R의 내적합치도

계수(α)는 .83으로 나타났다.

결 과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들에 대한 조사대상자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다음과 같다. SARA는 12.73(6.94), DAS는 6.44(4.01), PCL-R은 15.62(7.96), WARA는 22.33(10.32)으로 나타났다.

우선, WARA와 SARA, DAS, PCL-R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우선, SARA는 WARA의 총점을 비롯한, 대부분의 하위요인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WARA 총점은 SARA와 유의수준 .01에서 .54의 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DAS은 WARA의 총점을 비롯한, 모든 하위요인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DAS와 WARA 총점은 유의수준 .01에서 .75의 상관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PCL-R은 WARA 총점과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r=30$, $p < .05$). 또한, WARA의 하위요인들 중에서는 스토킹, 과거범죄력, 역동적 특성과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위험수준에 따른 아내학대 위험성 평가도구의 차이

조사대상자를 고위험 집단과 저위험 집단을 구분하여, 이에 따른 아내학대 위험성 평가도구의 차이를 알아보았다(표 8). 그 결과, DAS와 WARA에서 고위험 집단이 저위험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t=-4.90$, $p < .001$; $t=-3.88$, $p < .001$). 이는 DAS와 WARA가 가정폭력에서 기인한 생명 손실이나 상습적인 재범 등을 구별해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또한, 위험수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WARA의 어떤 하위요인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표 8. 위험수준에 따른 평가자용 도구의 차이

	집단	사례수	평균(표준편차)	df	t
SARA	저위험	26	11.19(6.17)	68	-1.50
	고위험	44	13.64(7.28)		
DAS	저위험	26	3.85(2.81)	93	-4.90***
	고위험	69	7.42(3.97)		
PCL-R	저위험	26	13.50(7.96)	67	-1.74
	고위험	43	16.91(7.77)		
WARA	저위험	25	15.96(6.82)	91	-3.88***
	고위험	68	24.68(10.44)		

*** $p < .001$

자녀학대를 제외한 모든 하위요인인 신체적 학대는 $t = -3.49, p < .001$, 성적학대는 $t = -2.82, p < .01$, 심리적 학대는 $t = -2.56, p < .05$, 의처증은 $t = -3.87, p < .001$, 스토킹은 $t = -3.25, p < .01$, 대처행동은 $t = -2.10, p < .05$, 경제적 학대는 $t = -2.23, p < .05$, 과거범죄력은 $t = -2.99, p < .01$, 역동적 특성은 $t = -2.31, p < .05$ 로 고위험 집단이 저위험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위험수준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도구들의 ROC 분석

원래 신호탐지이론으로부터 출발하게 된 ROC(Receiver Operation Characteristic) 분석은 네 가지 예측가능성에 근거한다. 우선 위험하다고 예측한 범뢰자가 후에 진짜로 범뢰를 하는 경우(TP; True Positive), 위험하다고 예측하였으나 재범을 하지 않는 경우(FP; False Positive), 위험하지 않다고 예측하였던 범뢰자가 나중에 재범을 저지르지 않는 경우(TN; True Negative), 위험하지 않다고 예측하였으나 후에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FN; False Negative) 네 가지가 재범예측 시 고려되어야 할 가능성이다. 이 네 가지 가능성을 토대로 하여 예측력에 관한 두 가지 지표를 산출할 수 있는데 그것은 예측도구의 민감성(sensitivity)과 한정성(specificity)이다. 참고로 민감성지표는 $TP / (TP + FN)$ 으로 한정성 지표는 $TN / (FP + TN)$ 으로 산출한다. 이들 두 지표가 높으면 높을수록 진정한 재범자를 잘 맞출 확률과 진정한 비재범자를 잘 맞출 확률은 증가하는 것이다.

위험수준에 대한 평가도구의 ROC 분석을 한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SARA의 AUC는 .64, 표준오차는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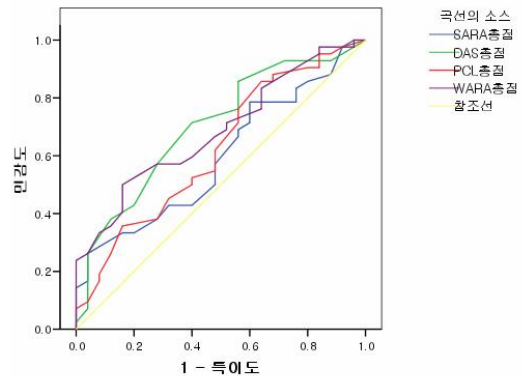


그림 1. 위험수준에 대한 평가도구들의 ROC분석

$p < .124$, 95%신뢰구간은 .47에서 .80까지의 범위를 나타냈다. DAS의 AUC는 .76, 표준오차는 .08, $p < .003$, 95%신뢰구간은 .61에서 .78까지의 범위를 나타냈다. PCL-R의 AUC는 .61, 표준오차는 .09, $p < .220$, 95%신뢰구간은 .44에서 .78까지의 범위를 나타냈다. WARA의 AUC는 .70, 표준오차는 .08, $p < .020$, 95%신뢰구간은 .55에서 .85까지의 범위를 나타냈다. 따라서 위험수준을 변별하는 데 있어서는 본 연구의 평가도구들 중 DAS와 WARA의 AUC가 .70이상을 나타내어, 유의미한 변별력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WARA 검사의 척도화 절차와 예측 절단점 산출

다음에서는 WARA 총점을 근거로 이들 두 준거집단을 가장 잘 변별하는 예측 절단점은 ROC 분석을 통해 산출하였다. ROC는 예측력을 누적합수로서 보여주는 결과로,

표 9. WARA의 변별기준점의 변별력

	AUC	SE	유의도	95% 신뢰구간		민감도	1-특이도	PPP	NPP
				하한	상한				
WARA15이상	.592	.069	.176	.456	.728	.824	.640	.830	.400
WARA16이상	.630	.068	.056	.496	.763	.779	.520	.821	.405
WARA17이상	.615	.068	.090	.482	.748	.750	.520	.803	.406
WARA18이상	.620	.067	.076	.488	.752	.721	.480	.797	.414
WARA19이상	.638	.066	.042	.509	.767	.676	.400	.803	.444
WARA20이상	.644	.065	.034	.516	.771	.647	.360	.778	.429
WARA21이상	.684	.062	.007	.562	.806	.647	.280	.863	.429
WARA22이상	.721	.057	.001	.610	.833	.603	.160	.911	.438
WARA23이상	.699	.058	.003	.585	.814	.559	.160	.905	.412
WARA24이상	.663	.060	.017	.544	.781	.485	.160	.892	.375
WARA25이상	.668	.059	.013	.552	.784	.456	.120	.912	.373

변별도구가 전혀 예측력이 없는 경우 변별선 이하의 면적이 50%, 변별선 이상의 면적이 50%에 해당하는 양태를 보인다. 하지만 변별기준이 우연 수준 이상의 예측력을 지녔을수록 변별기준을 토대로 도출된 그래프 이하의 면적은 더 넓어지게 된다. 따라서 변별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그래프 이하의 면적은 정확한 예측력을 상징하는 누적비율을 뜻하는데, 표 9의 AUC(Area Under Curve)의 지표가 변별기준점을 찾아내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다.

ROC분석 결과 산출된 표 9의 변별지표들을 살펴보면 변별기준점이 22이상일 때 AUC(정확한 예측력의 누적비율)가 최대가 되어 .72에 이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⁶⁾ 이때 발생하는 민감도는 .60, 특이도는 .84였다. 이는 적절한 수준의 예후타당도 지표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UC가 최대였던 22점을 잠정적인 변별기준점으로 채택하였다. 이를 변별기준으로 적용하자면 WARA 점수 22점 이상의 가정폭력 행위자들은 상대적으로 가정폭력으로 인해 생명의 손실 위험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표 10에서 나타난 것처럼, WARA 22점 이상을 기준으로 채택했을 때, 가정폭력에 기인하여 생명에 대한 손실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정확히 위험성이 높다고 예측할(TP) 확률은 91.1(41/45×100)%이며, 생명 손실의 위험성이 낮은 사람에 대해서 위험성이 낮다고 정확히

예측할(TN), 확률은 43.8(21/48×100)%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개발한 WARA는 가정폭력에 기인한 생명 손실의 위험성을 비교적 정확히 예측해낸다고 평가할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아내학대 위험성 평가도구, 즉 가정폭력 중 아내학대의 고위험군을 변별해내는 도구를 개발하고자 노력하였다. 다음에는 연구 결과들을 중심으로 하여 논의 및 제언을 덧붙이고자 한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에서 가정폭력 중 아내학대 위험성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요인들을 추출하고, 덧붙여 ‘한국여성의전화 연합’ 상담원들을 대상으로 하였던 예비연구를 토대로 하여 한국판 아내학대 위험성 평가 도구인 WARA(Wife Abuse Risk Assessment)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WARA의 준거관련 타당도 중 공인타당도를 검증해보기 위하여, 가정폭력, 특히 아내학대에 대한 위험성 및 피해 범위를 측정하는 기존 검사들과의 관련성을 살펴 보았다. 그 결과, 구조화된 면담기법을 통하여 평가하도록 개발된 WARA의 경우, SARA, DAS, PCL-R과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WARA는 준거관련타당도가 우수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구조화된 면담기법으로 구성된 WARA의 평가자간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분석에 사용한 표본들 중 일부 사

6) 일반적으로 AUC가 .70 이상이면 준거집단에 대한 예측력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한다.

표 10. WARA의 변별기준점에 의한 예측력

		WARA 22점 이상으로 예측한 경우		전체
		저위험	고위험	
저위험	빈도	21(TN)	4(FP)	25
	WARA 22점 이상 %	43.8%	8.9%	26.9%
고위험	빈도	27(FN)	41(TP)	68
	WARA 22점 이상 %	56.2%	91.1%	73.1%
전체	빈도	48(all negatives)	45(all Positives)	93
	WARA 22점 이상 %	100%	100%	100%

례를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박사급 연구원 2명이 각 사례에 대해 가정폭력 위험수위를 WARA로 각기 평가하였다. 그 결과 WARA는 만족할 만한 수준의 평가자간 신뢰도를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교도소 표본에서는 가정폭력에 기인하여 배우자를 살해한 집단을 고위험 집단으로, 단순 친족 살해 집단을 저위험 집단으로 분류하고, 보호관찰소 표본에서는 전과 3범 이상이며 동종전과를 지닌 자들을 가정폭력의 고위험군으로, 그렇지 않은 일반 보호관찰대상자들은 저위험군으로 분류하였다. 이렇게 분류된 두 집단은 평가도구 측정치들 상에서 유의한 차이를 산출하는지 살펴보았다. 이는 현재 개발된 WARA가 아내학대의 위험수위를 의미있게 변별해내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 결과 두 준거집단간의 차이는 DAS와 WARA에서 유의한 차이를 포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WARA의 하위척도별 두 집단 간 차이는 WARA의 하위요인 중에서는 자녀학대 요인을 제외한 모든 요인들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위험요인들로 뽑은 신체적 학대,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의치증, 스토킹, 경제적 학대 등의 특성들이 가정폭력 고위험 집단에서 저위험 집단에 비해 더 빈번하고,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WARA 총점을 근거로 위험수준을 기준으로 분류된 두 준거집단을 가장 잘 변별하는 예측 절단점을 ROC 분석을 통해 산출하였다. WARA는 변별기준점이 22이상일 때 AUC(정확한 예측력의 누적비율)가 최대가 되어 .72에 이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적절한 수준의 예측타당도 지표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UC가 최대였던 22점을 잠정적인 변별기준점으로 채택하였다. 이를 변별기준으로 적용하자면 WARA 점수 22점 이상의 가정폭력 행위자들은 상대적으로 가정폭력으로 인해 생명의 손실 위험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토대로 보자면, 가정폭력에 기인한 생명 손실 위험성을 예측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은 WARA, PCL-R, DAS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DAS는 폭행행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WARA는 가정폭력 상황에서 아내학대 행위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기질적인 측면을 함께 평가하고 있으며, PCL-R은 가정폭력 뿐만 아니라 일반범죄에 있어서도 재범위험성을 가장 정확하게 예측하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이때, WARA의 변별기준점은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22점을 적당한 것으로 수용하면 되었고 PCL-R의 변별기준점은 일반적으로 25점⁷⁾ 정도를 사용한다. 또한, DAS의 변별기준점은 일반적으로 7점⁸⁾에서 고위험군을 선별하기 위한 변

7) 캐나다의 경우 싸이코패스를 변별하는 기준으로 PCL-R 30점을 사용하고 있지만, 영국 및 스코틀랜드의 경우에는 변별기준점을 PCL-R 25점을 사용하고 있다(Cooke & Michie, 2001). 현재 국내에서 PCL-R의 타당화 작업이 진행중인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잠정적으로 PCL-R 25점을 변별기준점으로 정하였다.

8) DAS의 경우 Campbell과 Webster 등(2004)은 남편의 학대로 인해 여성이 살해된 사건과 살해되지 않은 사건을 비교하였는데, DAS의 변별기준을 7점으로 하였을 때, 예측 민감도는 58%, 예측 명확성 즉 특이도가 87%였으며, ROC 분석 결과, AUC는 90.8%에 이르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DAS를 사용한 국내 연구(이수정, 2006)에서도 외국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변별기준점인 7점을 그대로 수용하여 사용한 바 있으며, 연구 결과 응답자들인 가정폭력에 기인하여 남편

표 11. 생명 손실 위험성에 대한 변별 기준표

위험성 등급		평가자용 도구의 변별기준점 활용	
최고 위험	WARA	22점	세 도구 모두에서 변별기준점 이상인 경우 : 가해자의 격리를 통해 피해자와의 분리 필요
	PCL-R	25점	
	DAS	7점	
고위험	WARA	22점	PCL-R이 변별기준점 이상이면서, WARA와 DAS 중 하나가 변별기준점 이상인 경우 : 가해자의 격리를 통해 피해자와의 분리 필요
	PCL-R	25점	
	DAS	7점	
중위험	WARA	22점	세 도구 중 하나에서 변별기준점 이상인 경우 : 가해자에 대한 집중관찰 후 의사결정 필요
	PCL-R	25점	
	DAS	7점	
저위험	WARA	22점	세 도구 모두에서 변별기준점 이상이 없는 경우 : 가해자에 대한 상담 및 제도적 처분 필요
	PCL-R	25점	
	DAS	7점	

별력이 최대가 된다고 인정된다.

이들 도구들을 함께 사용하여 가정폭력에 기인한 생명의 손실 가능성을 예측하고자 할 때에는 표 12를 참조하면 된다. 우선 세 가지 평가자용 도구에서 모두 위험도가 변별기준점을 넘어서거나 PCL-R이 변별기준점 이상이며 WARA와 DAS가 변별기준점 이상인 경우에는 형사사법기관의 긴급 개입이 필요하다. 이는 초범자들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하나 이 세 도구 중 한 가지 평가도구만이 변별기준점을 넘어서는 가정폭력범에 대하여는 집중보호관찰을 실시하는 동시에 상담 등을 함께 집행할 수 있을 것이다. 세 가지 도구 중 어떤 것에서도 변별기준점을 넘지 않는 경우, 일반 보호관찰을 집행하는 것이 적합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재범위험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일정 기간이 소요된 이후 재범을 추적하는 연구까지를 진행하지는 못했다는 점이다. 추후 재범추적을 통해 실증적 증거행동 측정치들을 확보한다면 WARA의 재범관련 예측타당도를 더욱 정확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구 1에서는 한국의 가정폭력 상황에서 아내학대에 대한 실제적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가정폭력을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상담원들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의 위험

요인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는 아내학대 위험요인에 대해 문헌조사만을 하는 방법보다는 현실성이 확보되지만, 실제로 가정폭력의 고통을 직접 겪은 피해자들로부터 얻는 자료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정폭력에 대한 상담원들의 주관적인 생각이 반영되었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추후 가정폭력 가해자 또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적용하여 도구의 요인구성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일 또한 필요할 것이다.

한국사회에는 전통적으로 ‘가족은 매우 사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가정폭력에 대하여서는 사회적·공적인 개입의 필요성이 적다’라는 인식이 만연해왔다. 그러나 여러 연구들은 가정폭력이 단순히 일회성을 지닌 사건이 아니며,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인 고통뿐 아니라, 생명까지를 담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임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위험한 범죄, 예컨대 생명의 손실까지도 야기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에도 이와 같은 취지는 잘 반영되어 있다. 개정안 제8조 제1항의 경우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게 명기하였다던가, 제29조 등에서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임시조치를 집행할 수 있도록 보완한 내용들은 이 같은 취지를 정확하게 반영한다. 더욱이 제21조 제1항과 제2항 등에서는 판사는 조사관 혹은 보호관찰관 등을 통해 가정폭력의 재범위험성 등을 평가하도록 명하고 있다. 이 같은 조항들은 가정폭력

을 살해한 여성들의 DAS 평균값이 9.1점, 표준편차 5.05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에서 DAS의 변별기준점을 외국과 동일하게 7점으로 적용하여도 크게 무리가 없음을 나타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DAS의 변별기준점을 7점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이 초래하게 될 고도의 위험으로부터 피해자(혹은 가해자 자신)를 보호하자는 취지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경찰단계의 응급조치나 검사나 판사의 판단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피해자의 생명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 같은 형사사법적 의사결정은 바로 ‘재발 우려’ 혹은 ‘재범 위험성’을 정확히 평가해내는 일인데, 본 연구과제는 가정폭력의 위험수위를 평가하는 데에 있어 의미 있는 결과물을 산출하고 있다. WARA, 그리고 DAS와 PCL-R의 사용은 만의 하나 가정폭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가해당사자가 오히려 피학대자에 의해 사망할 위험성을 의미있게 예견한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실증적 연구 결과들은 형사사법기관의 자의적 판단을 보다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기에 가정폭력에 기인한 고도의 위험가능성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은경 (2003). 가정폭력범죄 대응동향과 정책제언. 형사정책연구원

김영희, 박광배, 이재희 (2004). 여성 살인범의 특징, 범죄이유, 그리고 재할가능성 : 치료적 사범이념의 현실적 구현방안을 위한 심층면담 연구. 법무부 보고서.

김은경 (2006). 소송과정에서의 폭력피해자 보호현황과 쟁점들. 가정폭력피해지원 시스템의 문제와 과제. 가정폭력추방 연속토론회 3차 자료집, 31-63. 한국여성의전화연합.

김재민 (2006). 가정폭력 피해자 신변안전확보 과정에서 수사경찰위험성 평가에 관한 연구. 피해자학연구, 14(2), 327-353.

김재민 (2007).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 개입 현황과 피해자 안전확보를 위한 법령개선방안. 2007년 한국여성의전화연합 가정폭력관련 4차 연론포럼 자료집, 46-66.

김현정, 이수정 (2007). 학대남편을 살해한 피학대 여성의 판결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43-62.

김혜정 (2006). 개정법률안에 도입된 양형자료조사제도에 관한 검토 : 형사소송법및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26, 409-428.

박광배 (2007). 치료사법의 현황. 치료사법의 적용과 교정교화. 한국심리학회산하 형사사법심리연구회(가칭) 발표논문집, 2-55.

박영란 (2006). 여성인권의 시각에서 본 가정폭력 추방 정책의 현황 및 과제. 가정폭력추방 연속토론회 2차 자료집,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우먼타임즈 (2007). 가정폭력특별법 개정안은 취지 뒤엎는 개악. 2007년 7월 7일자.

이수정 (2006). 최신 범죄심리학. 북카페.

이수정, 서진환 (2005). 배우자 살인으로 수감 중인 가정폭력피해 여성의 심리특성에 근거한 면책사유 연구. 여성연구, 69, 93-138.

이수정, 윤옥경 (2003). 범죄위험성 평가와 활용방안. 한국심리학회지 : 일반, 22(2), 99-126.

채영주 (2005).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남편살해 심리연구.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국여성의전화연합 (2006). 가정폭력을 여성의 인권의 관점에서 다시 본다. 가정폭력추방연속토론회 1차 자료집.

홍창희 (1997). 가정폭력과 여성의 정신건강. 여성연구논집, 8, 41-58. 부산여자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Andrews, D. A., & Bonta, J. (1998). *The psychology of criminal conduct*(2nd ed.), Cincinnati OH : Anderson.

Campbell, J. C. (1981). Misogyny and homicide of women. *Advances in Nursing Science*, 3, 67-85.

Campbell, J. C. (1986). Assessing the risk of homicide for battered women. *Advances in Nursing Science*, 8(4), 36-51.

Campbell, J. C. (1995). Prediction of homicide of and by battered women. in J. C. Campbell(Ed.) *Assessing dangerousness : Violence by sexual offenders, batters, and child abusers*, 96-113. Thousand Oaks CA : Sage.

Campbell, J. C., Webster, D., & Koziol-McLain, J. (2003). Risk factors for femicide in abusive relationships : Results from a multi-Site case control study.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3(7), 1089-1097.

Cooke, D. J., & Michie, C. (2001). Refining the construct

- of psychopathy : Towards a hierarchical model. *Psychological Assessment*, 13, 177-188.
- Dutton, D. G., & Parkin, C. M. (1999). *Personality predictors of dysphoria in response to intimate conflict scenarios*. Unpublished manuscript, Department of Psychology,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Canada.
- Ellis, D. (2005). DOVE (Domestic Violence Evaluation) : An Instrument designed to assess and manage the risk of domestic violence.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La Marsh Research Centre on Violence and Conflict Resolution, York University.
- Gelles, R. J. (1988). Violence and pregnancy : Are pregnant women at greater risk of abuse. *Journal of Marriage Family*, 50, 841.
- Gelles, R. J. (1993). Alcohol and other drugs are associated with violence. pp. 182-196. in *Current controversies on family violence*, edited by R. J. Gelles and D. R. Loseke.
- Grann, M., & Wedin, I. (2002). Risk factors for recidivism among spousal assault and spousal homicide offenders. *Psychology, Crime & Law*, 8, 5-23.
- Hare, R. D. (1996). *The hare psychopathy checklist-Revised*. Toronto, Ontario, Canada : Multi-Health Systems.
- Harris, G. T., Rice, M. E., & Cormier, C. A. (2002). Prospective replication of the Violence Risk Appraisal Guide in predicting violent recidivism among forensic patients. *Law and Human Behavior*, 26, 377-394.
- Hart, B. J. (1992). *Program standards for batterer intervention services*. Reading, PA : Pennsylvania Coalition Against Domestic Violence.
- Hilton, N. Z., Harris, G. T., & Rice, M. E. (2001). Predicting Violence by Serious Wife Assaulter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6(5), 408-423.
- Howitt, D. (2002). *Forensic and criminal psychology*. Pearson Education.
- Kemshall, H. (1996). *Reviewing risk : A review of research on the assessment and management of risk and dangerousness* : Implications for policy and practice in the Probation Service. A report for the Home Office Research and Statistics Directorate. London : Home Office.
- Kropp, P. R., & Hart, S. D. (2000). The Spousal Assault Risk Assessment(SARA) Guide : Reliability and validity in adult male offenders. *Law and Human Behavior*, 24, 101-118.
- Laura Richards. (2003). MPS Domestic Violence Risk Assessment Model. Metropolitan Police.
- Loza, W., Dhaliwal, G., Kroner, D. G., & Loza-Fanous, A. (2000). Reliability, construct, and concurrent validities of the Self-Appraisal Questionnaire.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27, 356-374.
- Ostrom, B., Kleiman, M., Cheesman, F., Hansen, R., & Kauder, N. (2002). *Offender Risk Assessment in Virginia : A three-stage evaluation*. 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s.
- Quinsey, V. L., Harris, G. T., Rice, M. E., & Cormier, C. A. (1998). *Violent offenders : Appraising and managing risk*. Washington, DC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Saunders, D. G., Lynch, A. B., Grayson, M., & Linz, D. (1987). The inventory of Beliefs About Wife Beating : The construction and initial validation of a measure of beliefs and attitudes. *Violence and Victims*, 2, 39-57.
- Siegel, J. M. (1986). The Multidimensional Anger Invent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91-200.
- Straus, M. A. (1979). Wife beating how common and why? *Victimology : An International Journal*, 2, 13-29.
- Straus. (eds). *The Dark side of Families : Current Family Violence Research*. London : Sage Publications.
- Straus, M. A., Hamby, S. L., Boney-McCoy, S., & Sugarman, D. B. (1996).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 (CTS2) : Development and preliminary

- psychometric data. *Journal of Family Issues*, 17 (3), 283-316.
- Straus, M. A., Hamby, S. L., Finkelhor, D., Moore, D. W., & Runyan, D. K. (1998). Identification of Child Maltreatment with the Parent-Child Conflict Tactics Scales (CTSPC) :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data for a national sample of american Parents. *Child Abuse and Neglect*, 22(4), 249-270.
- Stuart, E. P., & Campbell, J. C. (1989). Assessment of patterns of dangerousness with battered women. *Issues Mental Health Nursing*, 10, 245-260.
- Walker, L. E. (1984). *The battered woman syndrome*. New York : Spinger.
- Walby, S., & Myhill, A. (2000). Reducing domestic violence...What Works? Assessing and managing the risk of domestic violence. *Policing and reducing crime unit briefing notes*. London : Home Office.
- Websdale, N. (2000). *Lethality Assessment Tool : A Critical Analysis*, [web page]. National Electronic Network on Violence Against Women. Available : www.vaw.umn.edu/Vawnet/lethality.htm[2002, 11th September].
- Webster, C. D., Dougals, K. S., Eaves, D., & Hart, S. D. (1997). *HCR-20 : Assessing the Risk for Violence (Version 2)*. Vancouver : Mental Health, Law, and Policy Institute, Simon Fraser University.
- Weisz, A. N., Tolman, R. M., & Saunders, D. G. (2000). Assessing the risk of severe domestic violence : The importance of survivors 'prediction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5(1), 75-90.
- Wilson, M., & Daly, M. (1993). Spousal Homicide Risk & Estrangement, *Violence & Victims*, 8, 3-16.
- [http : //www.womanabuseprevention.com/html/Risk%20Assessment%20instruments.htm](http://www.womanabuseprevention.com/html/Risk%20Assessment%20instruments.htm)
- [http : //www.csc-scc.gc.ca/text/pblct/forum/e141/e141m_e.shtml](http://www.csc-scc.gc.ca/text/pblct/forum/e141/e141m_e.shtml)
- [http : //ww3.uwc.ac.za/docs/%20Library/Theses/Theses%202005%201st%20Grad/Londt_m_p.pdf](http://ww3.uwc.ac.za/docs/%20Library/Theses/Theses%202005%201st%20Grad/Londt_m_p.pdf)
- [http : //www.mhcop-research.com/vragsum.htm](http://www.mhcop-research.com/vragsum.htm)
- [http : //epm.sagepub.com/cgi/content/abstract/52/3/687](http://epm.sagepub.com/cgi/content/abstract/52/3/687)

Development of a Risk Assessment Tool for Measuring Wife Abuse

Soo Jung Lee Hye Sun Lee Soo Kyung Lee Hyun Jung Kim
Kyonggi University

This study developed a risk assessment tool for measuring severity of wife abuse.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this measurement tool aims to prevent women from lethality of abusive intimate partner relationship, especially domestic violence. In order to accomplish this purpose, first, the risk factors for wife abuse were selected based on a comprehensive literature review and an interview of Korea Women's Hot Line's counselors. Then these risk factors were constructed to be the preliminary form of WARA (Wife Abuse Risk Assessment). In order to evaluate the validity indexes of WARA, Pearson correlations between the WARA and SARA, DAS, PCL-R was calculated. As a result, WARA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SARA, DAS, PCL-R. ROC analysis was applied to produce a cutoff-score discriminating high risk group from low and medium risk groups. Consequently, WARA presented to have good discriminating power among criterion groups. Finally, it was discussed how to use this assessment tool for criminal justice professionals to predict lethality of domestic violence.

Keywords: Domestic violence; Wife Abuse; Risk assessment; High risk group; Low risk group; Criminal Justice

1차원고 접수일 : 2007년 12월 10일
수정원고 접수일 : 2008년 2월 4일
게재 확정일 : 2008년 2월 9일